시 보

선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098호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인천가족공원) 지형도면 정정고시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21호 동인천2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 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22호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23호 광역시도 6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대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 1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24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실효 고시 ····· 1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25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19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영종 미단공동7BL) ··· 20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25호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공고 ····· 2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50호「제9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2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55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공고(안) ····· 3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6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4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6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4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71호 경유자동차 상시운행제한 위반 체납 과태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4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72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4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73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4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7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5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8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공고·열람 ····· 5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9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5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9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5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9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56

회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공보관실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9호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7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24호 하천점용(일시)허가 ····· 71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인천가족공원) 지형도면 정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96호(2020. 3. 2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인천가족공원) 지형도면 고시한 내용 중 지형도면의 오기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23),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55),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1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1.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정사유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인천가족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에 해제 대상이 아닌 남동구 간석동 산1-5번지 일원이 제척된 사항을 정정

※ 금회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96호(2020. 3. 23.)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공원,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과 같음

2. 지형도면(정정):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21호

동인천2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인천2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동구 동인천2
2. 사업위치: 송현동 98-13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4. 변경내용: 필지 수 및 면적

지구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동인천2	59	2,152.0	59	2,147.0	- 면 적: 감 5㎡

5. 토지조서 열람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전화032-440-4553, 팩스032-440-8682)
   - 동구 민원지적과(전화032-770-6349, 팩스032-770-635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22호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67호, 2019. 11. 18.)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 1. 25.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위치·면적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89번지 일원(938,624.5㎡)

나. 사업시행자 :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다. 관 리 기 관 :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인천 서구 경서동 689번지]

라. 조 성 목 적

○ 수도권 내 중소기업체를 이전 집단화시켜 중소기업전문단지를 조성하여 관련산업의 공업기반을 구축하고,

○ 관련기업의 협업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효과 등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며,

○ 악취 등 공해로부터 경서지구에 인접한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첨단 업종 유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첨단·친환경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

마.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바. 추진경위

○ 1990.10.14.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안)수립 및 동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녹지지역 → 공업지역)

○ 1991.07.20. : 도시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건설부 고시 제410호, 면적 480,000㎡)

○ 1992.04.14. :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승인 신청 (건설부)

○ 1992.07.29. :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승인 (건설부)
○ 1992.08.19. :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고시(인천시 고시 1992-137호)
○ 1992.12.23. :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인가
○ 1993.02.08. : 공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 지정(시행자-인천주물지방공단관리공단)
○ 1993.06.12. : 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 1993.09.01. : 공업단지 조성사업 착공
○ 1995.12.29. : 공단개발 사업 준공
○ 1999.03.22. : 산업단지 명칭 변경(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 1999.06.03. :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고시 제68호)
○ 2007.04.30.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06-13호)
○ 2009.12.07.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09-370호)
○ 2015.05.04.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15-102호)
○ 2015.06.15.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입주관리요령 고시(고시 제2015-135호)
○ 2016.08.29.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16-193호)
○ 2019.06.04.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19-130호)
○ 2019.11.18.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19-367호)
○ 2022.12.05. :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22-404호)

사. 분양현황

(단위 : ㎡)

구 분	조성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산업시설	769,095.9[1]	769,095.9[1]	-	'93.9.1 ~ '95.12.29	인천서부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
지원시설	21,795.3[2]	21,795.3[2]	-		
공공시설	118,563.6[3]	-	-		
녹지구역	29,169.7[4]	-	-		
계	938,624.5	790,891.2	-		

주 1) 산업시설(공장, 지식산업센터)용지
2) 지원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변전소
3) 도로
4) 공원, 녹지

아. 입주현황

구 분	입주업체수 (개소)			면 적 (㎡)			비고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2022. 12. 현재	293	266	27	769,095.9	679,467.0	89,628.9	

자. 입지여건

시설명	총계획	개발기간	시행기관
도로(m)	○ 광로: L=2,500m(구역내360m), B=40~85m ○ 중로: L=3,743m, B=15~20m ○ 소로: L=5,613m, B=8~10m	1993년 9월 ~ 1995년 12월	
용수(㎥/일)	○ 공업용수: 1,780㎥/일 ○ 생활용수: 1,252㎥/일 ○ 총 용 수: 3,032㎥/일		
폐기물처리	○ 소각(1,759ton/년) 및 위탁처리		
오·폐수처리(㎥/일)	○ 오수: 1,100㎥/일 ○ 폐수: 전량 위탁처리		
전력(kwh/일)	○ 221,664kwh/일		한국전력
통신(회선)	○ 1,474회선		KT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 인천 및 수도권 내 이전대상 기업의 우선 입주 및 이전공장의 조기 안정지원

○ 환경오염물질 업종의 제한 및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환경오염 최소화로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

○ 관련기업의 협업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 기업의 집적 이익 도모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

총 면 적	산업시설 구역[1)]	지원시설 구역[2)]	공공 시설구역[3)]	녹지구역[4)]
938,624.5	769,095.9	21,795.3	118,563.6	29,169.7

주 1) 산업시설(공장, 지식산업센터)용지
2) 지원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변전소
3) 도로
4) 공원, 녹지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변경)

(단위 : ㎡, %)

구 분	계	공장·물류·지식산업시설·정보통신용도	비 고
면 적	769,095.9	769,095.9	
구성비	100.0	100.0	

○ 구획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 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물류·지식산업시설용도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보관·창고업 및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단, 데이터센터는 상·하수도 및 전력공급 등에 관한 협의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지원시설 구역
  - 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폐주물사 재생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업무시설(주거형 오피스텔 제외), 운수시설
- 공공시설 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용도별 구획평면도 :【별첨1】참조

다. 업종별 배치계획

○ 업종별 배치계획 :【별첨2】참조

-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04호)에 의거 저공해/친환경 업종 유치를 위한 통합 배치

라. 입주관리계획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 보관·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52101, 52102)

- 연구개발업 (70)
- 부동산 임대업 (68112)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발전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지식산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정보통신산업)*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4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범위 이내일 경우 허용함

※ 주요유치업종 및 입주제한사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따름

※ 입주대상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양도·양수, 임대·차 등에 의한 신규입주자에 한한다.

※ 기존에 입주한 업체가 입주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없다.

2)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8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대상 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단,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공장(업종 및 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로 「산업집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입주제한

구분		입주제한
특정대기 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체
특정수질 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체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악취 배출	복합 악취	•「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2조에 따른 복합악취 배출 100U를 초과하는 배출업체
	지정 악취	•「악취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배출업체
비산먼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건설업 제외)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업체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5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업체 (단,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은 제외)

○ 지원시설구역

- 법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이 있는 자

마. 사후관리 계획

○ 사후관리계획

-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법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을 준수토록 관리
-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사항의 변경 또는 신규업체가 발생 하였을 때는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산업용지 분할

-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분할 기준면적은 660㎡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사전에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분할도면을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산업용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사. 입주기업체 지원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부지규모 11,405.3㎡

○ 변전소 설치 : 부지규모 3,6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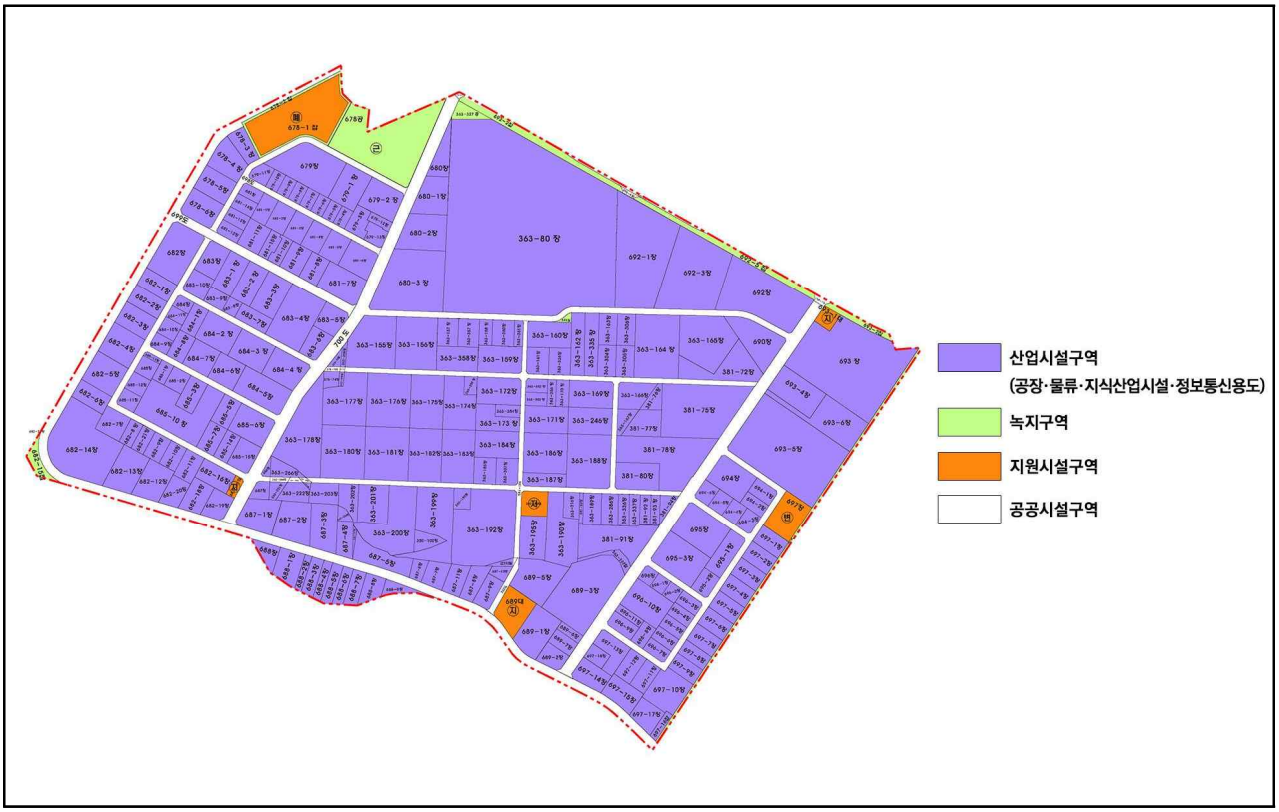
○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정비소 : 부지규모 1,566.8㎡

○ 관리공단 : 부지규모 3,318.2㎡

○ 주물조합 : 부지규모 1,868.0㎡

【별첨1】 용도별 구획평면도

【별첨2】 업종별 배치계획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23호

광역시도 6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대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광역시도 6호선(사업명: 축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가.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 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결정	광역시도	6	-	대로1-3호	24,209.1	중구 신흥동3가 41-2	중구 신흥동3가 35-19		0.68

나. 도로구역 결정 사유

○ 항만구역 내 단절구간 도로개설로 주변의 물류기업의 교통 불편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교통정체 완화로 항만 물류수송 원활 도모

다. 사업시행 기간: 2023. 3. ~ 2026.12.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과 같음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73)
중구청 건설과(☎032-760-7453)

2.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41-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3호선)사업

○ 명칭: 축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공사

다. 면적 및 규모

○ 연장(L)=0.68km, 폭(B)=35m

라. 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마.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23. 3. ~ 2026.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게재 생략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게재 생략

3.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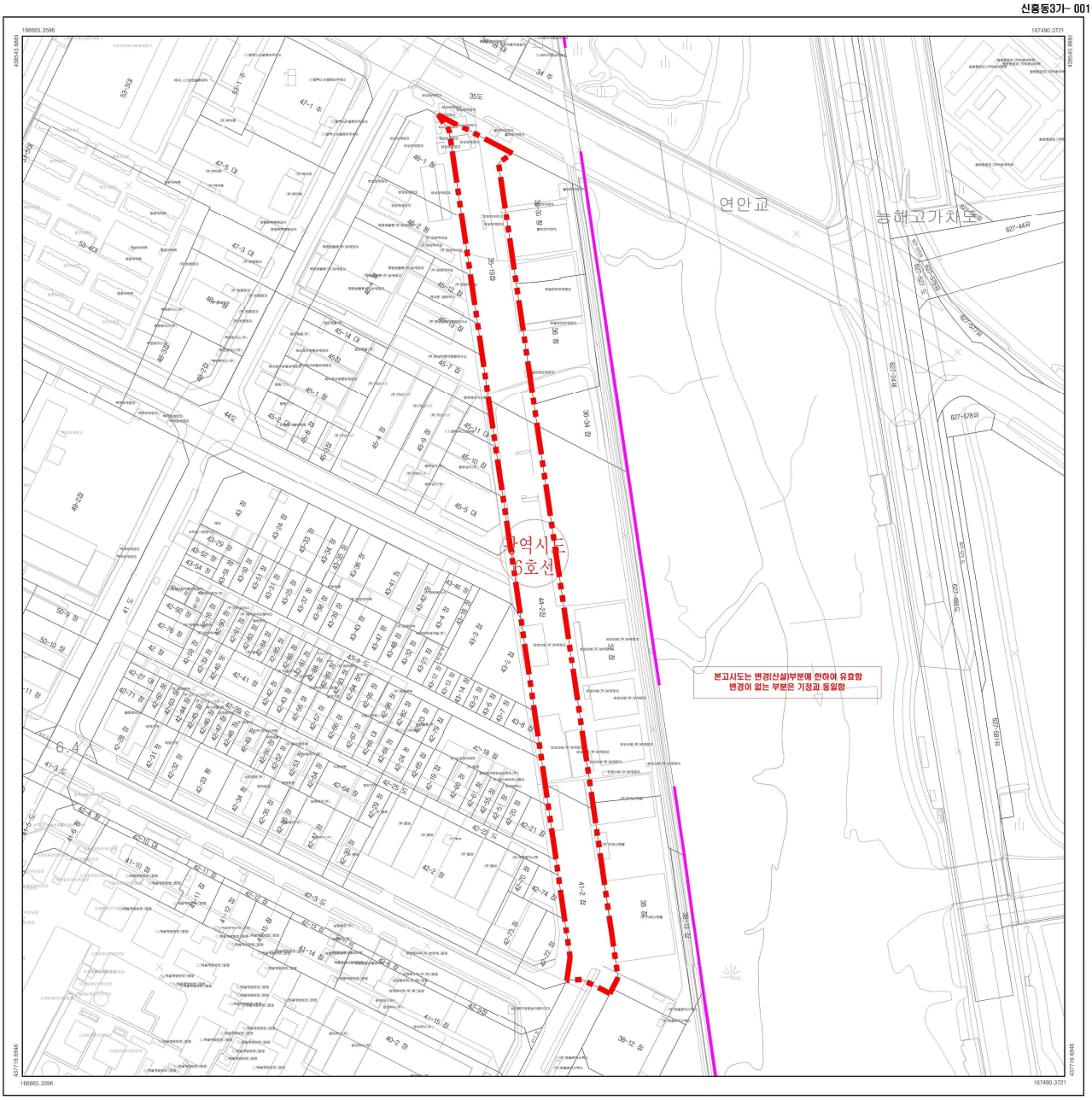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편입토지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소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중구 신흥동3가	35-19	잡	7,984.1	7,984.1	해양수산부	국	1/1				
2	중구 신흥동3가	41-2	잡	5,343.1	5,343.1	해양수산부	국	1/1				
3	중구 신흥동3가	44-2	잡	10,881.9	10,881.9	해양수산부	구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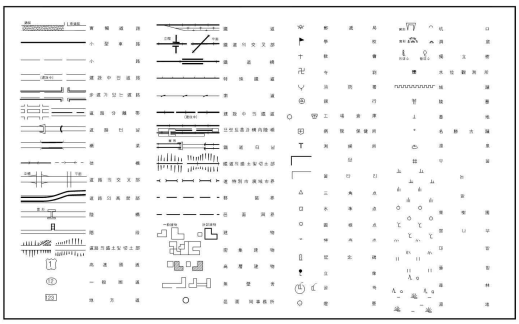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도로구역 결정(광역시도6호선) 지형도면고시도

신흥동3가- 001



축척 : 1 / 1,500

0m 25m 50m 100m 1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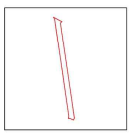
범 례

- 도로구역
- 지 적 선
- 지 형 선
-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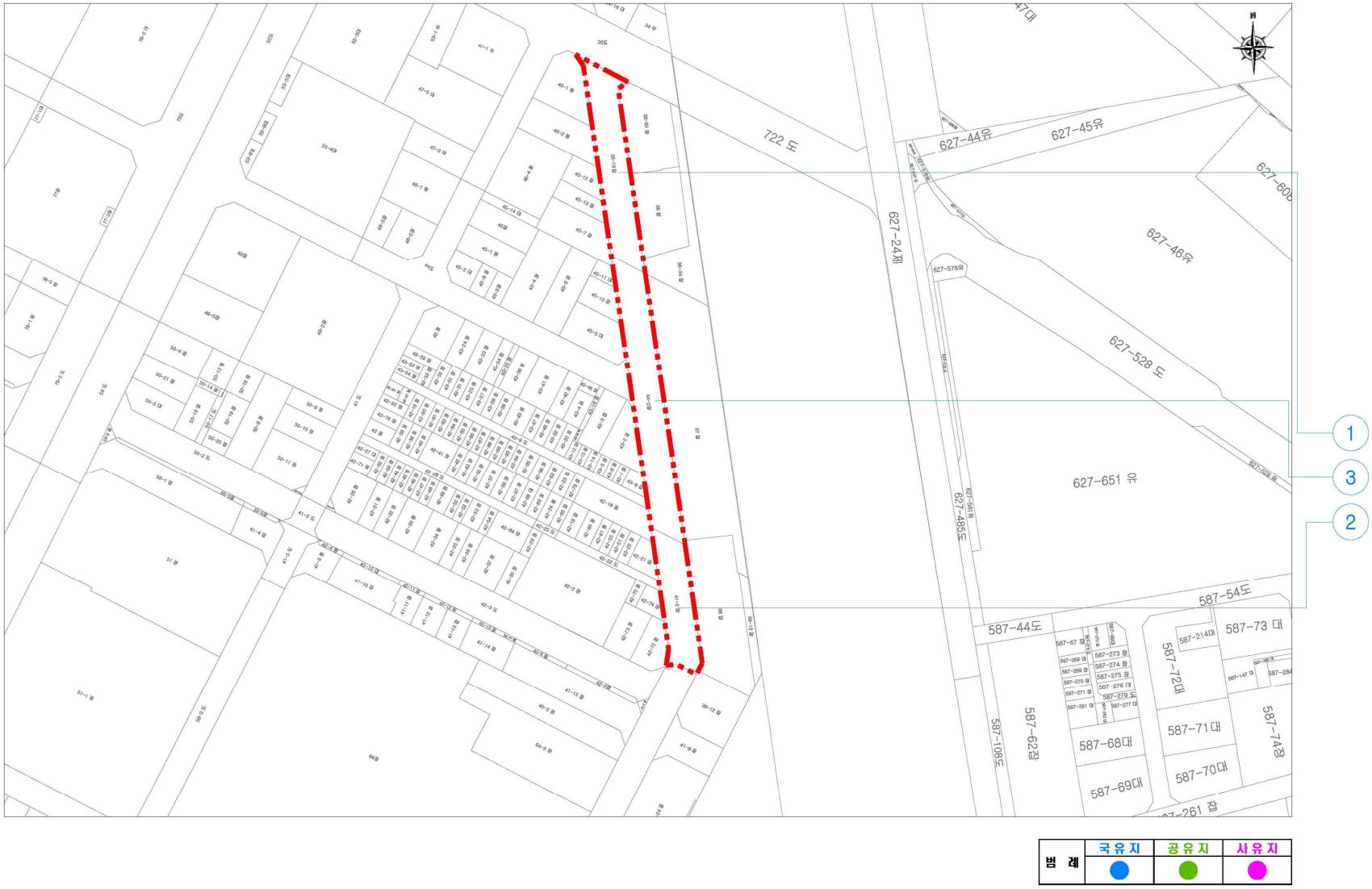
지정권자 : 인천광역시장
지정일자 : 2023년 01월 25일
고시년도 : 2023년 01월 25일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23 - 23호
작성년월일 : 2023년 01월 25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인천광역시장
본 도면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23 - 23호(2023.01.25)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인천광역시 도로과	인천광역시 도로과	인천광역시 도로과	인천광역시 도로과
직 위	주 무 관	도로계획팀장	주 무 관	도로계획팀장
성 명	방 제 웅	김 윤 도	방 제 웅	김 윤 도
확인인				

색 인 도



용 지 도 [대로1-3호선]


722 도
627-24제
627-44유
627-45유
627-60대
627-46유
627-578유
627-528 도
627-651 유
627-485도
587-54도
587-44도
587-108도
587-62잡
587-68대
587-69대
587-71대
587-70대
587-72대
587-74잡
587-73 대
1
3
2
범 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24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실효 고시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실효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032-458-7053),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032-560-449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1.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03-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녹지)

○ 명칭: 석남완충녹지 3단계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면적: 127,175㎡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장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 예정일 : 2022. 12. 31.

6. 실효 사유 : 사업시행기간 만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관계도서 비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 비치]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25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년 1 월 25 일

인천광역시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인천대공원 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64번지 외 3필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재난예방 방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정기점검 실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영종 미단공동7BL)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3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1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영종 미단시티 공동7블록 주택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주체: 금아산업 주식회사(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1301~3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변경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367-1(영종 미단공동7BL)

나. 대지면적: 24,882.30㎡

다. 연 면 적: 53,780.0834㎡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1층~지상34층, 3개동, 388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6개동
-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1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3. 8. ~ 2026. 8.(변경)

5. 변경 내용: 사업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변경

6.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나. 도로법 제61조 도로점용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25호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공고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수수료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시 소요되는 현장 출장 경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2023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붙임
2. 현장 출장 경비
   가. 시내(구)지역: 116,000원
   나. 시외(군)지역: 232,000원
3. 도서지역 시험의뢰 시 현장출장에 따른 선박이용료, 숙박료 및 기타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징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032-440-5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수수료(원)	소요기간
성토용흙	함 수 비	KSF2306	22,600	6일
	밀 도	KSF2308	66,700	7일
	액 성 한 계	KSF2303	72,400	5일
	소 성 한 계	KSF2303	49,700	5일
	세 립 토 비 율	KSF2309	46,700	4일
	다 짐	KSF2312	231,300	4일
	실 내 C B R	KSF2320	395,400	10일
노 체	함 수 비	KSF2306	22,300	6일
	다 짐	KSF2312	207,000	4일
	현 장 밀 도	KSF2311	89,300	4일
	평 판 재 하	KSF2310	207,200	4일
노 상	함 수 비	KSF2306	22,200	6일
	다 짐	KSF2312	199,900	4일
	현 장 밀 도	KSF2311	88,700	4일
	평 판 재 하	KSF2310	207,200	4일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체 가 름	KSF2502	219,900	5일
	밀도및흡수율	KSF2503	56,700	7일
	함 수 비	KSF2306	22,200	6일
	다 짐	KSF2312	204,500	4일
	현 장 밀 도	KSF2311	88,700	4일
	평 판 재 하	KSF2310	207,200	4일
	실 내 C B R	KSF2320	361,300	10일
	마 모 율	KSF2508	70,600	6일
	0.08㎜통과율	KSF2511	38,700	4일
입도조정기층	체 가 름	KSF2502	222,200	5일
	밀도및흡수율	KSF2503	57,000	7일
	함 수 비	KSF2306	22,200	6일
	다 짐	KSF2312	204,500	4일
	현 장 밀 도	KSF2311	88,700	4일
	평 판 재 하	KSF2310	207,200	4일
	실 내 C B R	KSF2320	361,300	10일
	안 정 성	KSF2507	136,500	15일
	마 모 율	KSF2508	69,100	6일
	0.08㎜통과율	KSF2511	32,900	4일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수수료(원)	소요기간
콘크리트용 골 재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F2505	56,900	6일
	잔골재의 표면수량	KSF2509	43,400	4일
	염화물함유량	KSF2515	35,100	5일
	유기 불순물	KSF2510	27,300	5일
콘크리트 벽 돌	치 수	KSF4004	12,300	4일
	압 축 강 도	KSF4004	32,500	4일
	흡 수 율	KSF4004	67,600	5일
속 빈 콘크리트 블 록	겉모양및치수	KSF4002	13,000	4일
	압 축 강 도	KSF4002	32,500	4일
	흡 수 율	KSF4002	67,600	5일
굳 은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압 축 강 도	KSF2405	16,100	실소요일
	휨 강 도	KSF2408	91,800	실소요일
마샬 안정도	안 정 도	KSF2337	88,600	4일
	흐 름 값	KSF2337	88,600	4일
	다 짐 횟 수	KSF2337	44,600	4일
플 랜 트 혼 합 물	추출 체가름	KSF2502	151,300	5일
	역 청 함 유 량	KSF2354	145,000	5일
혼합물의 포 설	코아채취두께	KSF2367	150,900	4일
	밀 도	KSF2446	75,800	4일
콘크리트 경계블록	겉모양,모양및치수	KSF4006	12,100	4일
	휨 강 도	KSF4006	41,600	4일
	흡 수 율	KSF4006	45,500	5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 록	겉모양,모양및치수	KSF4419	12,100	4일
	휨 강 도	KSF4419	41,500	4일
	흡 수 율	KSF4419	48,100	5일
호 안 용 블 록	형 상 치 수	KCPI001	34,200	4일
	압 축 강 도	KCPI001	29,800	4일
	흡 수 율	KCPI001	69,200	5일
석 재	압 축 강 도	KSF2519	37,300	5일
	비중및흡수율	KSF2518	59,300	7일
보통벽돌 (치장·점토)	치 수	KSL4201	13,200	4일
	압 축 강 도	KSL4201	45,400	4일
	흡 수 율	KSL4201	57,700	5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50호

「제9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제9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행사를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3. 1. 19.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제9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나.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

다. 사업장소 : 인천시 전지역

라. 참여대상 : 유치부 · 초 · 중 · 고등학생 및 학부모

마. 사 업 비 : 100백만원

바. 사업내용 : 바다를 주제로 그림 그리기, 수상자 심사 및 시상식 등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연 · 축제 · 문화행사 사업이 가능한 법인 · 단체이거나

나. 또는 최근 1년 이내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 단체이며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공익적인 문화행사 및 축제관련 실적이 있는 법인 · 단체

3. 공모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1. 19.(목) ~ 2. 2.(목) / 15일간

나. 접 수 처 : 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https://www.losims.go.kr)

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기타 방법 접수 불가)

4. 신청서류

가. 공모신청서, 법인 · 단체 소개서, 서약서 각 1부

나. 사업계획서(프리젠테이션 자료포함) 1부

다. 실적증명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5. 사업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및 진행

- 1단계 : 서류심사
- 2단계 : 발표(프리젠테이션)·인터뷰 심사(자체 선정심의위원회)
- 3단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최종 선정**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절성, 행사내용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인터뷰 심사일정은 별도 통보
※ 발표 및 인터뷰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선정통보 : 선정 법인·단체(보조사업자) **개별 통보**

6. 보조금 집행, 사업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 미 제출시 선정자격 취소

나. 보조금과 자부담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및 사용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별도 서식)

7. 유의사항

가. 법인 · 단체에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 시에는 미 접수 처리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및 선정에서 제외

다. 심사결과 적격 법인 · 단체가 없을 시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신청한 법인 · 단체가 1개일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

마.「2023년도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자부담비율 10% 이상)

바. 선정된 법인 · 단체는 총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및 제출

사.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구비하여 집행

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

차. 공모신청서에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은 제출자 책임

카.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부서(문화예술과)에 문의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032-440-4024)

【참고2】공모신청서

「제9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신청서

신청개요	업체(단체)명			
	소 재 지	□□□-□□□		
	대 표 자	성 명 :	담 당 자	성 명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E-mail :		E-mail :
단체소개	설 립 연 도			
	설 립 목 적			
	자 산 내 역			
	인 적 구 성 (조 직 도)			
	활 동 실 적	※ 사진, 인쇄물, 보도자료 등 첨부		
제출자료	o 사업계획서(프리젠테이션 자료 포함) 1부. o 실적증명서 1부. o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단체)등록증 1부.			

상기 기재내용과 제출 자료는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제9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에 대한 보조사업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2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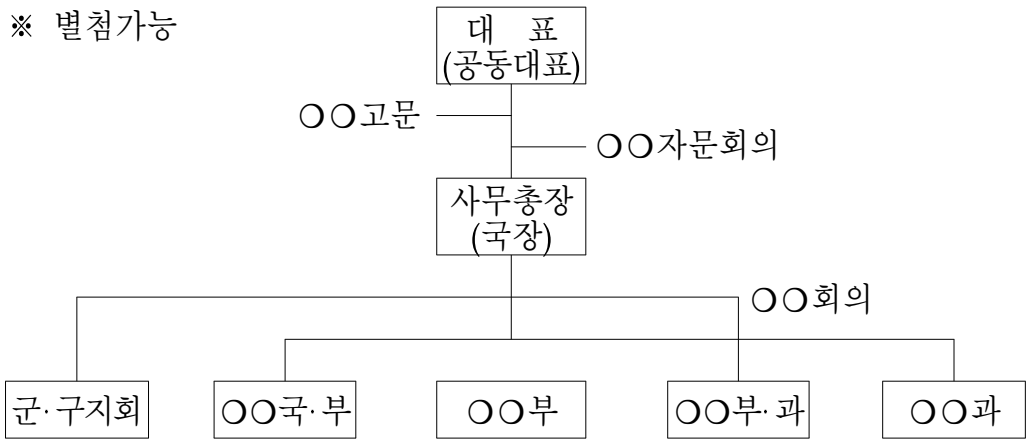
신청인 : 단체명 (직인)

대표자 (사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참고3】법인(단체) 소개서

「제9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보조사업자 선정 법인(단체) 소개서

<table>
<tr><td>법인(단체)명</td><td colspan="3"></td><td>대표자</td><td></td></tr>
<tr><td>대 표 자
주요경력</td><td colspan="5">○ 주요경력 :
※ 다수인 경우 2~3인까지 기재</td></tr>
<tr><td>설립목적</td><td colspan="5">○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td></tr>
<tr><td>단체연혁</td><td colspan="5">○ ‘90.11.10 ○○ 센터 창립
○ ‘95. 7.18 ○○ 사단법인 설립허가 (해당부서명 :)
○ ‘98.10.28 ○○ 인천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설립(해당부서명 :)</td></tr>
<tr><td>주요사업</td><td colspan="5">○ 정관 또는 회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td></tr>
<tr><td>인력현황</td><td colspan="5">○ 회 원 수 : 명
○ 사무국직원수 : 명 (회장1, 사무총장1, 부장2, 직원1 회계담당 등)</td></tr>
<tr><td>조직도표</td><td colspan="5">※ 별첨가능

</td></tr>
<tr><td rowspan="8">조직현황</td><td colspan="3">○처/ ○국/ ○과/ ○팀</td><td>회원수</td><td>○○○명(2022.2월 현재)</td></tr>
<tr><td colspan="5">대표자 및 임원 현황 (※ 따로 붙임 가능)</td></tr>
<tr><td>직위</td><td>성명</td><td>전화번호</td><td>현직업</td><td>주요경력</td></tr>
<tr><td></td><td></td><td>010-0111-0111</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사무국 직원 현황(상근/비상근 구분)</td></tr>
<tr><td colspan="5"><table>
<tr><td>계</td><td>사무국장</td><td>부장</td><td>과장</td><td>팀장</td><td>기타( )</td></tr>
<tr><td>0명/ 0명</td><td>0명/ 0명</td><td>0명/ 0명</td><td>0명/ 0명</td><td>0명/ 0명</td><td>0명/ 0명</td></tr>
</table></td></tr>
</table>

【참고4】서약서

「제9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신청자 서약서

단 체 명	

본 단체에서 제출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붙임 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의 선정 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본 단체는 사업자 선정방식에 동의하며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거짓으로 확인되어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한다.

2023년 2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인)

대표자 (사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참고5】사업계획서

「제9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

<table>
<tr><td>사 업 명</td><td colspan="2">☞ 표지의 신청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td></tr>
<tr><td>사업 기간</td><td colspan="2">2023. . . ~ . .</td></tr>
<tr><td>사업 장소</td><td colspan="2"></td></tr>
<tr><td>사업 내용</td><td colspan="2">❍ ☞ 세부 프로그램명을 간략히 기재
❍</td></tr>
<tr><td rowspan="2">참가 규모
☞ 참여 예술단체 및 예술가 전체 규모를 기재</td><td>예술단체</td><td>
<table>
<tr><th>계</th><th>국내</th><th>해외</th></tr>
<tr><td>00팀</td><td>00팀</td><td>00팀</td></tr>
</table>
</td></tr>
<tr><td>예 술 가
(스태프 포함)</td><td>
<table>
<tr><th>계</th><th>예술가</th><th>스태프</th><th>기타</th></tr>
<tr><td>00명</td><td>00명</td><td>00명</td><td>00명</td></tr>
</table>
</td></tr>
<tr><td>사업비(예산)
☞ 지원신청내용을 포함한 예산계획을 기재</td><td colspan="2">
<table>
<tr><th>구분</th><th>예산액(원)</th><th>비율(%)</th><th>확정 여부</th></tr>
<tr><td>계</td><td></td><td></td><td></td></tr>
<tr><td>시 보조금</td><td>50,000,000</td><td>100</td><td>확정</td></tr>
<tr><td>자체 부담금</td><td></td><td></td><td></td></tr>
<tr><td>민간 후원금</td><td></td><td></td><td></td></tr>
</table>
</td></tr>
<tr><td>주 최</td><td colspan="2">☞</td></tr>
<tr><td>주 관</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후 원</td><td>(확 정)</td><td>☞ 확정된 후원 혹은 협력기관, 기업체 등을 기재</td></tr>
<tr><td>(미 정)</td><td>☞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협의 중인 기관, 기업체 등을 기재.</td></tr>
<tr><td>신청단체</td><td colspan="2">❍ 단체명 :
❍ 대표,임원, 실무 책임자 등
<table>
<tr><th>직위 직책</th><th>이름</th><th>연락처(핸드폰)</th><th>e메일</th></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실제 사업 담당자의 해당내용을 기재</td></tr>
</table>

1 사업 목적 및 기획 의도

□ 사업 목적

○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기술하여 주시되, 사업 추진 배경이나 필요성 등도 추가로 기재

-

○

-

□ 행사 주제 (혹은 기획 의도)

○ ☞ 2019년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에 대한 콘셉트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

○

-

2 세부사업계획

□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내 용 :

□ 사업 목표

구 분	참여인원 (명)	행사규모 (명/팀)		비 고
		주요행사	부대행사	

☞ 향후, 결과보고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 / 객관적인 증빙자료(사진, 통계, 보도기사, 관련 리뷰 등)

□ **세부 프로그램 내용** (상세히 기술)

○ 주요 행사 (예시)

구 분	내 용		관람객(명)	비고
본 행사	일시	2023. ○. ○		
	장소	○○○		
	내용			
부대행사	일시	2023. ○. ○ ~ ○. ○		
	장소	○○○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일시			
	장소			
	내용			

○ 사업 장소

장소명	행사장 규모 (참여인원)	비 고

□ **지역성과 연계된 특성화 (혹은 차별화) 방안**

○ ☞ 개최 지역의 특성 또는 지역적 소재(역사, 문화, 장소, 인물 등)가 지닌 독창성과 연관된 본 사업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 기술

-

○

-

□ 추진 프로세스(추진일정 및 절차)

일정	추진내용	비고
2023. ○~○	기본 방향 설정 및 자료 조사	
2023. ○~○		
2023. ○~○		
2023. ○~○		

☞ 신청 사업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주제 선정, 참가자 결정, 사업 준비 및 전개 과정, 결과물 공유 및 확산 등 신청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추진 방법을 사업 특성에 맞도록 설명

□ 안전관리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1 및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 내용 중심으로 작성

○ 시설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조직도 등



○ 비상시 조치, 연락처

구분	조치담당업무	책임자(소속)	연락처

○ 안전관리인력 확보

구분	조치담당업무	관리요원(소속)	비고

○ 안전대비 관련 단체보험 가입 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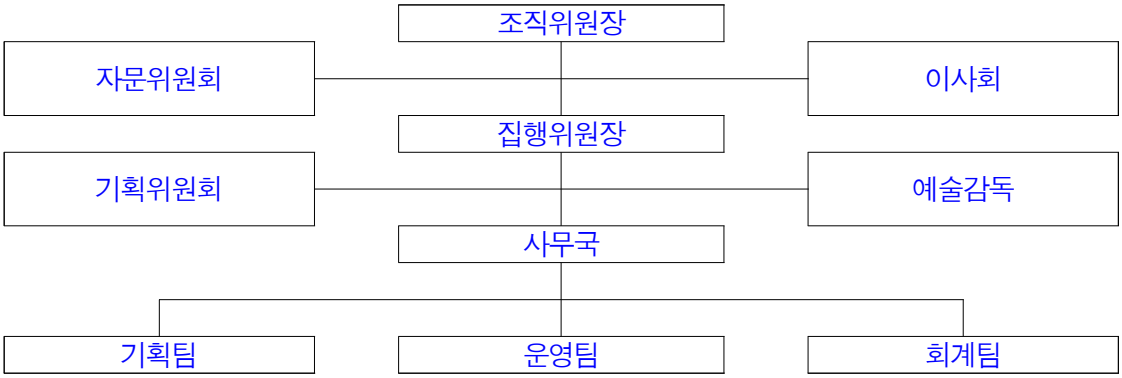
□ 안전관리 예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1 및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 내용 중심으로 작성

(단위:원)

항 목	산출근거	지출액	신청액
안전요원 인건비	10만원×10인×7개 행사	7,000,000원	7,000,000원
행사 보험료	200만원×1식	2,000,000원	자부담
구급약품 구입	50만원×1식	500,000원	자부담

3 조직 및 운영 인력

□ 운영 조직도(예시)



☞ 사업을 주최(주관)하는 조직의 구성을 알 수 있는 조직도를 위와 같은 이미지나 도표 형태로 작성

□ 운영 인력

○

-

○

-

구 분	역 할	성 명	현직 / 주요경력	비 고
①		○○○		상근
⑥		○○○		비상근

☞ 위 운영 조직도의 세부 구성 인적사항을 위 예시와 같이 작성

4 예산 계획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금					
자부담비율	(%)				

□ 지출항목별 집행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집 행 계 획			
지출항목		금액			산출내역
예산항목	비목	합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인건비	출연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				※기타 필요항목 기재
	·				
사 업 진행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식 비				
	국내여비				
	·				※기타 필요항목 기재
	·				
홍보비	인쇄비				
	홍보비				
	현수막				
	·				※기타 필요항목 기재
	·				
활동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안전보험료				
	·				※기타 필요항목 기재
	·				

<작성요령>

① 지출항목 :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로 편성(그 외의 항목 불가)하고,
편성목안에서 다시 강사비, 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유의사항

- 지출항목 내 동일 건의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할하여 편성 불가
【예시 : 리플릿 제작(100만원)을 보조금(50만원)과 자부담 (50만원)으로 계상 불가】
- 반드시 산출기초 작성 및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기재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진행)
- 사업과 관련 없는 법인·단체의 경상적 운영비는 편성 불가(보조금, 자부담 공통)
【임·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공과금, 장비구입, 차량유지·관리비 등】

- 일반시민의 부담(교육비, 참가비, 입회비 등)하는 자부담은 사업취지에 어긋나면 불인정

5 참가자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 홍보 계획

○ 예) 사전 홍보 계획

-

○ 예) 매체 홍보 계획

-

○ 예) SNS 및 온라인 홍보 계획

-

○ 예) 인쇄물 또는 설치물 제작·활용 계획

-

○ 예)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 활성화 계획

□ 참가인원 확보 계획

○ 예) 관련 이벤트 및 캠페인 활용 계획

-

○

-

6 파급효과(기대효과)

□ 바다의 중요성 인식개선에 대한 기여도

○

-

□ 자체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 예) 참가자 만족도 조사 추진

-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주요 조사내용, 결과 환류

○ 예)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주요 조사내용, 결과 환류

7 참고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사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고 자료(언론, 전문지 보도 등)

【참고6】실적증명서

「제9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보조사업자 선정 실정증명서

<table>
<tr><td rowspan="5">신 청 인</td><td colspan="2">법 인 (단 체) 명</td><td></td><td>대 표 자</td><td></td><td></td></tr>
<tr><td colspan="2">영 업 소 재 지
(주 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d></td></tr>
<tr><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td><td></td><td>제 출 처</td><td></td><td></td></tr>
<tr><td colspan="2">증 명 서 용 도</td><td colspan="4">제안서 응모 제출용</td></tr>
<tr><td colspan="2">범 위 및 기 준</td><td colspan="4">공익적인 문화행사 및 축제 관련 실적</td></tr>
<tr><td rowspan="5">사업수행
실적내용</td><td colspan="2">사 업 명</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사 업 개 요</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총 사 업 금 액</td><td colspan="3">₩</td><td>100%</td></tr>
<tr><td rowspan="2">계약번호</td><td rowspan="2">계약일자</td><td rowspan="2">계약기간</td><td colspan="2">이행실적</td><td rowspan="2">비 고</td></tr>
<tr><td>비율(%)</td><td>실적(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증 명 서
발급기관</td><td colspan="6">위 사실을 증명함
2023년 월 일
기 관 명 : (인)</td></tr>
<tr><td colspan="6">발급부서 :</td></tr>
<tr><td colspan="3">전화번호 :</td><td colspan="3">담 당 자 : (인)</td></tr>
</table>

주)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실적은 발주 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55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공고(안)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을 처리하고, 같은 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승인일자: 2023. 1. 17.

2. 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인천광역시 관할 개발제한구역 67.54㎢

○ 주요 내용

구 분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육군 제2291부대	국방부장관	부평구 구산동 245번지 일원	당초: 1,131,583 변경: 917,457 증감: 감214,126	당초: 183,751.55 변경: 218,266.38 증감:증34,514.83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부평구 도시재생과

4.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6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사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320377	주식회사 오아이씨코리아 (김일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369번길 12 (청천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3개월 ('23.1.19.~4.18..) [2023.1.1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6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사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320131	㈜우경일렉텍 (장만희)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8로 30, ㈜우경일레텍 (오류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3개월 ('23.1.19.~4.18..) [2023.1.1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71호

경유자동차 상시운행제한 위반 체납 과태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해차량 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체납 과태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경유자동차운행제한) 및 제49조(과태료)
   나.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과태료 부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라.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마.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대상 : 상시운행제한 위반(22년6월) 체납 과태료 압류통지 송달 불가 63건, ‘공시송달 대상’ 붙임 문서 확인
4. 공고기간 : 2023. 1. 20. ~ 2023. 2. 2.(14일간)

5. 공고내용

가. 공고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단속 결과 2022년6월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하고 체납에 따른 압류 전 독촉고지(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 예정)를 하였습니다.

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위반차량(말소 시 대체차량)에 대하여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다.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압류해제 등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종료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440-839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압류물건(자동차)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압류차량 구분			
1	이*원	81수3567	97서5159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6일, 12시06분41초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3-5 안성방면 2차로
2	김*만외1(김*규) *채권면제	03조3610	03조3610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11일, 16시02분23초	서울특별시 강변북로(구리방향) 2차로
3	김*필	25라1804	25라1804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7일, 12시20분10초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2차로
4	주*완	65무5537	65무5537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7일, 05시11분01초	경기도 안산시 매송지하차도(안산방향) 1차로
5	이*남	25다7800	25다7800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9일, 18시15분24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3차로
6	김*훈	89우4687	89우4687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9일, 15시01분14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산 6-3(2차로)
7	김*성	27누3420	60로7499	대체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04일, 14시06분26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2차로
8	표*경	53거7747	04두4935	대체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17일, 17시09분22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3차로
9	박*수	35머7152	35머7152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02일, 16시07분46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10	이*천	43가2058	43가2058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05일, 11시21분47초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정부IC) 3차로
11	안*호	57누7982	57누7982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07일, 13시23분15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2차로
12	손*현	02루1801	02루1801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4일, 02시31분50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13	장*주	87머6436	87머6436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11일, 17시50분55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14	이*희	80서6060	80서6060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13일, 11시02분19초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65-3 화성방면 3차로
15	(주)혜*클*스*	33버6202	33버6202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11일, 15시02분50초	서울특별시 경인고속도로 1차로
16	A*S*R*K*U*O* K*A*R*L*O	72저8579	72저8579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7일, 16시56분44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4차로
17	최*영	65서6008	65서6008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6일, 23시53분52초	서울특별시 여의교(여의대방로) 여의교 (여의대방로) 2차로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압류물건(자동차)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압류차량 구분			
18	박*학	73오9119	73마2254	대체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1일, 06시12분00초	서울특별시 동일로 4차로
19	한*수	64보5737	64보5737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15일, 16시45분59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20	최*일	15오2020	15오2020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30일, 09시57분51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산 6-3(2차로)
21	전*선	80너8833	80너8833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9일, 12시08분09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22	함*흠	05보7751	29조2139	대체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10일, 12시56분42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5차로
23	공*희	77더1526	77더1526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6일, 02시02분17초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98-67 안성방면 2차로
24	유*복	02어7259	02어7259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0일, 14시38분52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3차로
25	윤*일	13다7586	13다7586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19일, 18시37분40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2차로)
26	김*성	인천81다2788	인천81다2788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01일, 14시24분41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5차로)
27	전*학	인천81마5207	인천81마5207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2일, 07시01분19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4차로
28	김*연	86러3155	86러3155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0일, 13시28분14초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용이동 96-9 2차로
29	이*오	인천82다6423	인천82다6423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1일, 19시57분33초	서울특별시 밤고개로 2차로
30	백*연	34라9625	34라9625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19일, 15시27분12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3차로
31	Y* S*N C*U*	08구3657	08구3657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9일, 06시53분46초	인천광역시 계양대교 전방 3차로
32	정*준	25라1487	25라1487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30일, 04시57분33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3차로)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압류물건(자동차)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압류차량 구분			
33	(주)훼*리*합*설	91머4743	91머4743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3일, 08시39분52초	경기도 성남시 탄천IC 2차로
34	이*수	52도7839	52도7839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17일, 06시59분46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35	양*승	60구5904	60구5904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6일, 07시17분49초	서울특별시 올림픽대로(잠실방향) 4차로
36	김*남	74너6949	74너6949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11일, 14시34분58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37	김*섭	80버9745	80버9745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4일, 11시53분04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0(2차로)
38	백*	58라6875	58라6875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9일, 15시24분18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39	지*녀	51조1460	51조1460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30일, 17시52분04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산 6-3(1차로)
40	김*석	90부4699	90부4699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8일, 07시53분08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41	안*순	54소4438	54소4438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2일, 22시00분09초	서울특별시 양재IC 2차로
42	A*D*L* M*H*M*D S*L*M M	87러4425	87러4425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9일, 18시38분01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2차로)
43	박*우	48로4430	48로4430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1일, 06시58분40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2차로
44	정*교	86누3813	86누3813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13일, 09시27분39초	인천광역시 신상교앞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06-212(2차로)
45	황*현	59머1183	15조3315	대체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7일, 16시00분52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2차로
46	박*수(공채면제)	28러3268	28러3268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30일, 14시34분34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4차로)
47	(주)8*산*	20보2846	20보2846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8일, 10시33분44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압류물건(자동차)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압류차량 구분			
48	황*달	21조6486	21조6486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8일, 09시24분01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49	김*애	04다4734	04다4734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9일, 12시52분25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2차로)
50	A*I A K*U*I*R A* J*B*R*	06주4650	06주4650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30일, 18시35분29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4차로)
51	김*민	13무2937	13무2937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10일, 09시51분10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2차로
52	정*엽	27러6613	27러6613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0일, 18시38분19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3차로
53	정*근	23두4356	23두4356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0일, 16시48분22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3차로
54	김*오	90노6245	90노6245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16일, 12시28분39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55	이*훈	91루5841	91루5841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15일, 09시14분35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1차로
56	박*우	04수1680	04수1680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6일, 11시49분17초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풍곡육교 1차로
57	권*민	43마5227	43마5227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07일, 15시03분30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58	형*우	인천33루1850	인천33루1850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05일, 16시31분13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59	윤*호	89버2158	89버2158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9일, 09시44분49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2차로
60	(주)성*산*	81소3874	81소3874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7일, 14시18분31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1차로
61	(주)지*씨*디	94다3724	94다3724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08일, 08시27분21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2차로
62	(주)경*정*	86부3501	86부3501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24일, 16시35분04초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수원방면) 1차선
63	윤*호	86부5529	86부5529	위반차량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6월18일, 08시19분17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시흥동3가 69-1(송도→남항방향)(3차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7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측정대행계약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디엘건설㈜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제11호	곽수윤	1981.12.17.	측정대행 계약 변경	한국에너지환경(주)	(주)대명환경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7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서강엔지니어링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135호)	배병희	2020.08.12.	기술인력 변경	김영춘 (대기환경기사) [대체기술사]	좌동
				박춘기 (대기환경기사1급)	좌동
				노원배 (건설기계기사2급) [대체기사] (대기-수질 공통)	좌동
				박솔이 (산업위생관리산업 기사)	안세원 (전기산업기사) [대체기사] (대기-수질 공통)
㈜서강엔지니어링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163호)	배병희	2022.10.27.	기술인력 변경	손성남 (수질환경기사) [대체기술사]	좌동
				김규성 (수질환경기사)	박솔이 (수질환경기사)
				노원배 (건설기계기사2급) [대체기사] (대기-수질 공통)	좌동
				박준환 (토목기사1급)	안세원 (전기산업기사) [대체기사] (대기-수질 공통)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7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디케이에스 종합건설 주식회사	도기산	2023. 1. 19.	인천230003	450,000,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06, 203-1호 (청학동, 연수광장프라자)	

2023년 1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8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5.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20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계양경기장 수익시설(벨로드롬경기장) 내 용도변경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면적

- 대지면적: 234,884.2㎡(계양경기장) 중 14,294.9㎡(벨로드롬경기장)

○ 규모

- 사업 규모: 벨로드롬경기장 지하 1층 ~ 지상 2층 총 연면적 3,725.49㎡

· 기정: 벨로드롬경기장 2층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 변경: 벨로드롬경기장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 벨로드롬 경기장 지상 2층 관람장 일부 면적 → 사무실 용도변경: 140.8㎡

위치		기정		변경	
		용도	건축면적(㎡)	용도	건축면적(㎡)
벨로드롬경기장	지하 1층	기계실 등	314.63	기계실 등	314.63
	지상 1층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1,833.73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1,833.73
		휴게음식점	109.20	휴게음식점	109.20
		공중화장실	90.00	공중화장실	90.00
		매점	16.00	매점	16.00
		휴게음식점	8.00	휴게음식점	8.00
	지상 2층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1,353.93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1,213.13
				사무실	140.8
합 계			3,725.49		3,725.49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인천광역시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실시계획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3. 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계양구 서운동	207	체육용지	249,107.3	인천광역시장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8.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032-440-1713, 남동구 정각로29 민원동 3층)

○ 계양구 도시재생과(☎032-450-5633, 계양구 계산새로88 본관 4층)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9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사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320333	주식회사 협주 (전해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88, 1호(구월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3개월 ('23.1.21.~4.20..) [2023.1.1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9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사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320440	주식회사 조인네트워크 (박경욱)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3층 321호(주안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3개월 ('23.1.21.~4.20..) [2023.1.1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9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변경 사항 : 대표자**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제2014-0- 인천광역시-4호	(사)겨레하나 인천지부(인천겨레하나)	대표자	박 영 일	**한 상 욱**	2023.1.20.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9호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술창업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창업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창업환경 고도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변경하여 종합적인 창업지원 조례의 성격을 명확히 함

-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4조)

다.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기관 협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7조)

라. 창업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18조)

-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창업육성위원회로 변경하여 종합적인 창업육성에 관한 사항 자문

마. 창업지원 및 창업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9~20조)

바. 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1~26조)

사. 기타 창업플랫폼 구축, 창업교육 및 행사, 포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7~30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투자창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신관 투자창업과(1303호)

(2) 연락처 : 전화)032-440-3282, FAX) 032-440-8631
전자메일)yjhestia@korea.kr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창업자의 지원과 창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기술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4. “청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창업생태계”란 창업자를 비롯한 창업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서로 협력·보완·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상호 작용 체계를 말한다.

6.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창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술창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대학생, 청년 등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창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

5. 창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창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창업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창업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육성·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유망한 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굴·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창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창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창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창업문제에 관심있는 청년 및 창업가, 시민사회단체

4.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 의원

5. 창업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6.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창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분과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창업자(예비창업자・재창업자 포함)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제공
3. 창업자 제품의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등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등
8. 창업자 육성을 위한 자금, 펀드 및 판로 지원
9. 창업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 지원
10.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따로 운영규정 및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21조(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사안별로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창업지원시설 공간 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간 민원 등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상생협의회 위원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창업지원기관 운영자 및 창업 전문가, 창업자
2. 청년, 지역주민
3. 창업 및 청년문제에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
4. 창업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기초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5.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존속기한에 따른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23조(협의회 존속기한) 협의회 존속기한은 구성한 날(협의회 위원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제21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와 관련없이 구성 및 운영을 종료한다.

제24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정기 회의는 분기별 소집하고, 임시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협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결과를 창업지원시설 조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협의회 간사는 제15조, 수당 등은 제17조, 운영세칙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협의회로, 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본다.

제27조(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운영) 시장은 창업자(예비창업자·재창업자를 포함한다)의 창업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원 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온라인 창업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창업교육) 시장은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등 시민들에게 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창업행사 운영) 시장은 창업 문화의 확산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시장은 창업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술기반 창업 업종(제2조제1항제3호 관련)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			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제조업 (C)	(C) 10	식료품 제조업	정보 통신업 (J)	(J) 58	출판업
	(C) 11	음료 제조업		(J)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C) 12	담배 제조업		(J) 60	방송업
	(C)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J) 61	우편 및 통신업
	(C)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J)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J) 63	정보서비스업
	(C)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M) 70	연구개발업
	(C)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M) 71	전문 서비스업
	(C)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M)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C)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M)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C)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N)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교육서비스업(P)	(P) 85	교육 서비스업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 24	1차금속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Q) 86	보건업
	(C)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Q)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R)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C)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 28	전기장비 제조업			
	(C)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 32	가구 제조업			
	(C) 33	기타제품 제조업			
	(C)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

제출자	조례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의견제출
○○○ (주소 및 연락처 기재)	○ ○ ○	○ ○ ○

기 타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24호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아라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장(인천지역본부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일시)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86-32, 86-56번지 일원
- 면 적: (일시) 75.0㎡ [86-32번지 A= 25.0㎡(1개소), 86-56번지 A= 50.0㎡(2개소)]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검단~경명로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시추조사(3개소)
- 내 역: 일시 굴착 및 복구 1식

5. 점용기간: 2023.01.18. ~ 2023.02.16. [(일시) 허가일로부터 30일간]